

Labor & Safety Q·A

분야 근로자 개념

제목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자 포함 여부

Q

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.

A

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“보호 및 관리”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」(예규 제258호)이 제정·시행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행하는 각종 안전·보건 상의 조치는 그 조치와 관련된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이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고, 개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임금·근로시간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위 지침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문제는 없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사업장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- (1)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제7호 적용과 관련해서는 동 연수생을 포함하여 당해사업장에 대한 법의 전부 또는 일부적용 여부를 판단
- (2) 특수건강진단실시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동 연수생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지도
- (3) 동 연수생에 대한 안전·보건교육은 국내근로자에 대한 사내교육시 같이 실시하도록 지도
- (4) 동 연수생이 조사대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조사를 실시하고,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업무담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조치

분야 업무상재해

제목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 중 재해시 업무상 여부

Q

1. 읍사무소 소속 미화요원의 통상근무시간은 하절기(1~10월)에는 06:00~15:00 동절기(11월~3월)에는 07:00~16:00이나 통상 1일 2시간씩 연장 근로를 하고 있으며 오전에는 12:00까지 오물수거 작업을 한 후 귀가하여 점심을 먹고 13:00에 읍사무소에 집합 오후작업의 지시를 받은 후, 담당구역 또는 공동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.

2. 위 미화요원이 오전 작업을 마치고 13:00경 읍사무소에 집합하여 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자전거(개인구입용)로 담당구역을 가던 도중 빙판길에 넘어져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의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
참고사항 : 자전거는 개인이 사비로 구입하여 2년여 사용하여 왔음.

A

사망근로자의 재해가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받은 작업담당구역을 가던중 발생한 재해라면 사용자의 재배 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상태는 작업의 부수적인 형태인 바, 이러한 경우 동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.

분야 안전·보건교육

제목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방송교육으로 대체가능 여부

Q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에 있어 사무직 및 생산인력부서(은행권 등의 검사업무)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작업장별로 방송교육으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.

- 생산인력부서(여직원임)는 은행권을 검사하는 작업장으로써 책상형 작업대에서 의자에 앉아 은행권을 검사하는 작업장이며 소음 등은 발생하지 않음
- 방송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교육시간은 1회 10분에서 30분 정도를 반복 방송교육으로 실시하여도 교육의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짐
- 또 다른 교육실시방법 중에 근무시간 매 5분전에 구내방송을 통하여 매일 전직원에게 방송교육을 실시할 경우 실시방법의 위법여부

A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,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노동부예규 제178호, 90. 11. 10) 제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동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적합한 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기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근무시간중 방송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☞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노동부 고시, 제96-9호) 참조

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, 기술지도

제목 철골 또는 강교제작 공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

Q 철골 또는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는 대부분이 구조물의 제작작업이고 설치공사는 전체 계약금액의 약10%를 차지하고 있는데, 총 계약금액에 구조물 제작공장 인부의 노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장을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제작공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
A 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과 시간·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제조업종인 제작공장에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분야 안전보건상의 조치

제목 공동도급공사는 누구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

Q 공동도급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(1) 산재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가 주간사회사의 대표 및 현장 책임자로 되어 있을 경우 여타 구성회사는 재해발생시에도 안전관리상의 책임이 없는 것인지 (2) 산재보험이 지분율에 따라 각각 사업개시신고가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도 여러 구성회사의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을 경우는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상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.

A (1) 주간사회사의 현장책임자(소장 등)는 공동이행도급업체를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것이므로 참여 업체 모두에게 안전관리책임이 있습니다. (2) 재해발생시 안전관리책임은 산재보험신고 또는 안전관리자선임신고 내용에 관계없이 법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

※ 출처 : 노동부(www.molab.go.kr) 전자민원창구